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(2004. 3. 26, 제1760호)가 개정됨에 따라,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명칭변경(안 제7조제1항)

- 체육청소년담당주사 ⇒ 문화체육담당주사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
나. 예산조치 : 관계없음
다. 기 타 : 없음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체육청소년담당주사”를 “문화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(안)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. ② (생략)	**제7조(간사)** ①----------,-------문화체담당주사로 ---. ② (현행과 같음)